

■ 최신 판례 ■

버스 무사고승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한 사례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17135 판결]

이광선 변호사 | 신혜주 변호사

무사고승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4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A 고속관광 주식회사 대표 이사인 B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C 씨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A 회사는 근로계약서에서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무사고승무수당은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개월 동안 총 6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 씨가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A 회사는 C 씨에게 총 120만원의 무사고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B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A 회사와 C 씨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C 씨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무사고승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